

베트남 법체계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e Vietnamese Legal System

성준호*
Joon-Ho Sung

〈목 차〉

- I. 서설
- II. 베트남 중재법체계의 구성
- III. 베트남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법제도
- IV.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베트남 상사중재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베트남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 베트남 민사소송법, 베트남법의 기본원칙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법학박사

I. 서 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교역국의 하나이며, 그 비중과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9년도 상반기(1~6월) 기준,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1위), 중국(2위), 일본(3위), 한국(4위) 차지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요교역국인 베트남의 중재제도와 중재절차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따라서 베트남 법원은 외국 중재정이 뉴욕협약가입국 또는 베트남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베트남 내에서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뉴욕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국가와 상호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당해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베트남 법원은 여러 가지 불분명한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 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해 왔으며, 이러한 법원의 국제적 시류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베트남은 종래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개혁정책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사법제도 역시 정비함으로써 중재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중재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상업활동으로 인한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 중재절차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2003년 상사중재령(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이 제정되었다. 이후 2010년 6월17일 베트남 국회는 상사중재령에 대치할 상사중재법(Law of commercial Arbitration No. 54-2010-QH12)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1월1일 발효하였다.

이러한 법의 제정 및 개정 이후 해당 법에 대한 해석과 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후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베트남 내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중재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법제의 소개 및 주요내용의 해석과 특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관련 법에서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를 중심으로 법률과 관련 법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도모하고, 판례의 내용을 통해 베트남 내에서의 중재체계의 변화추이를 가름해보고자 한다.

II . 베트남 중재법체계의 구성

베트남의 중재체계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상사중재법 및 상사중재법 부속법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베트남의 중재제도를 유지 및 구성하는 중요한 입법적·사법적 보완체계라고 할 수 있다.

1. 베트남 상사중재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베트남은 2003년 제정된 상사중재령(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¹⁾을 이후 베트남 상사중재법은 UNCITRAL모범법을 상당부분 수용하여 새롭게 상사중재법(Law of commercial Arbitration No. 54-2010-QH12)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1월1일 발효하였다.²⁾

당해 베트남상사중재법은 총 13장 8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³⁾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제1조~제15조), 제2장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s)(제16조~제19조), 제3장 중재인(Arbitrators)(제20조~제22조), 제4장 중재기관(Arbitration Centres)(제23조~제29조), 제5장 절차개시(Instituting [Arbitration] Proceedings)(제30조~제38조), 제6장 중재판정부(Arbitration Tribunal)(제39조~제47조), 제7장 임시적긴급조치(Interim Relief)(제48조~제53조), 제8장 분쟁해결을 위한 심문(Dispute Resolution Sessions)(제54조~제59조), 제9장 중재판정(Arbitral Awards)(제60조~제64조), 제10장 중재판정의 집행(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제65조~제67조), 제11장 중재판정의 취소(Setting Aside Arbitral Awards)(제68조~제72조), 제12장 베트남에서의 외국중재조직 및 활동(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Foreign Arbitration in Vietnam)(제73조~제79조), 제13장 시행조항(Implementing Provisions)(제80조~제82조)으로 짜여 있다. 중재판정부의 관할, 증거수집, 증인소환, 임시적 구제, 중재판정취소 등 하였다.⁴⁾

1)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No. 09/2003/PL-UBTVQH11 pass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n 25 February 2003, effective form 1 July 2003.

2) 베트남의 상사중재법 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관해서는 김선정, “2011년 베트남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2013, 99면이하 참조.

3) Law No. 54/2010/QH12 ON COMMERCIAL ARBITRATION :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Legislature XII, 7th Session (이하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17 June 2010)(<https://vanbanphapluat.co/law-no-54-2010-qh12-on-commercial-arbitration>)

4)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의 주요 특징에 관한 상세는 오현석,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제와 중재절차”, 국제상학 제 2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 Gibbins, Tilleke & Michael K. Lee & Doen Ngoctra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1, 9th ed., Global Legal Group, 2012, p.130.

2. 베트남 상사중재법 부속법령 등

베트남 상사중재법은 이를 보완하는 시행령 및 대법원의 의결을 통해 기술적으로 보완 및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베트남 상사중재법 시행령⁵⁾, 대법관회의 결의⁶⁾, 상사중재법의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⁷⁾을 통해 상사중재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국제중재절차에서의 표준화된 모델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1) 베트남 상사중재법 시행령

베트남 상사중재법 시행령은 중재센터 및 중재센터의 지점의 운영 등록 및 종료절차, 그리고 베트남에 기반을 둔 지사와 외국중재기관의 대표사무소의 설립면허 취소 및 운영 등록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특히 본 시행령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립허가증 및 운영 등록 및 서류의 허가, 재부여 또는 수정 신청서류, 중재센터 운영 종료 관련 서류, 중재센터 지점, 외국중재기관의 대표사무소 또는 베트남 지사는 관할 기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유효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 법무부는 15일 이내에 중재센터의 운영등록서류를 부여한다. 그러나 중재센터가 반복적으로 행정제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설립을 허가하는 증서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⁸⁾

(2)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

중래의 베트남에서의 중재판정은 2003년에서 2013년까지 국내 중재판정의 34%가 취소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상사중재법의 제정 이후에도 2011년 이래 2013년 까지 20건의 중재판정이 취소신청되어 50% 이상이 취소되었다.

이처럼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베트남에서의 높은 중재판정의 취소율로 인해 외국에서 베트남 중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이러한 불만을 불식시키고, 상사중재법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결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2014년 3월 20일 상사중재법에 관한 지침을 대법관회의 에서 2014년 7월 2일에 베트남 대법원 결의 01/2014를 채택하였다.⁹⁾

5) DECREE No. 63/2011/ND-CP OF JULY 28, 2011 of the Government detailing and guid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6) Resolution No. 01/2014/NQ-HDTP dated March 20, 2014,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이하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

7) Decree No. 124/2018/ND-CP dated September 19, 2018 of the Government on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63/2011/ND-CP of July 28, 2011, detail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8) <https://english.luatvietnam.vn/decree-no-63-2011-nd-cp-dated-july-28-2011-of-the-government-detailing-and-guiding-a-number-of-articles-of-the-law-on-commercial-arbitration-63453-Doc1.html>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는 중재법의 해석과 적용을 명확하게 하는 중요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에서는 중재합의의 유효성, 중재판정의 취소근거 및 베트남 법원의 감독 및 지원 역할, 그리고 베트남이 중재지인 외국중재에 관한 베트남 법원의 권한들을 다루고 있다.¹⁰⁾ 또한, 베트남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는 중재인이 판정시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고 그 판정이 국가,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¹⁾

(3) 상사중재법의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

2011년 7월28일 ‘상사중재법의 일부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령’¹²⁾이 발표되었다. 동 시행령에 따르면, 중재센터 운영등록시 중재센터업무사무소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 또는 등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개인과 단체는 운영등록신청, 중재센터설립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는 경우 비교를 위한 원본대조하여야 한다.¹³⁾ 중재센터헌장을 인증하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하여야 한다.

3. 베트남 민사소송법

베트남은 중재친화적 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 규율을 위해 2015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민사소송법에서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원이 승인 및 집행을 허가한 때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⁴⁾ 이러한 베트남 민사소송법상 외국중재판정의 승

9) Resolution Guidelines for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Council of Judges of the People’s Supreme Court, 01/2014/NQ-HDTP.

10) 정홍식/임병우/이연경/김강, “베트남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622면; Hogan Lovells, supra note 255 at 1.

11)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 제14조 제2항 (dd).

12) Decree No. 124/2018/ND-CP dated September 19, 2018 of the Government on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Government’s Decree No. 63/2011/ND-CP of July 28, 2011, detail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13) 베트남의 중재전문기관으로는 베트남국제중재센터를 비롯하여 총22개의 중재기관이 있다. 특히 특히 국제상사분쟁에 특화된 전문중재기관으로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가 있다. 베트남의 중재기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와 베트남국제중재센터의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성룡, FTA시대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VIAC 중재규칙과 KCAB 국제중재규칙 비교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30권 제2호, 2020, 28면이하; 오현석,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제와 중재절차, 국제상학 제2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367면 이하 참조; Nguyen Manh Dzung, Dang Vu Minh Ha, “VIETNAM”, Arbitration Guide IBA Arbitration Committee, 2018, p.3.

14)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27조 베트남법원의 판결과 외국법원의 판결 및 결정의 집행 또는 불승인 보장;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Ensuring the effect of the decisions of Vietnam’s Courts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r non-recognition of civil judgments/decisions of foreign Court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award)

1. 베트남 법원이 베트남에서 승인하고 집행하는 외국 법원의 민사 판결 및 결정은 베트남 법원의 민사 판

인 및 집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7부에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 절차 또는 민사법원 또는 외국법원의 판결; 대외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 규율하고, 특히 제17장에서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신청서 검토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452조에서는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는 제459조의 “불승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¹⁵⁾

베트남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이 뉴욕협약가입국 또는 베트남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또는 그러한 국가의 중재인이 내린 판정인 경우에 승인 및 집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호의 보증이 있으면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¹⁶⁾

결 및 결정의 법적효력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으며 민사 판결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베트남 법원이 승인하지 않은 외국 법원의 민사 판결 및 결정은 이 법 제43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러한 판결 및 결정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

2. 베트남에서 승인되고 집행되는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 법원의 효과적인 결정과 같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민사 판결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3. 외국법원의 민사판결 및 결정 또는 외국중재판정은 그러한 민사판결 및 결정 및 / 또는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베트남 법원의 유효한 결정이 있는때에만 베트남에서 집행된다.

15) CODE OF CIVIL PROCEDURE No.: 92/2015/QH13(이하 베트남 민사소송법)

(<https://www.wipo.int/edocs/lexdocs/laws/en/vn/vn083en>)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59조 불승인 유형(Cases of non-recognition)

1. 법원은 승인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한 항변사유의 증거가 충분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 a) 각각의 당사자에 대한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사자가 합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 b)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당해 준거법에 따라 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c) 대리인, 기관 및 개인인 중재판정의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선임 및 외국 중재인의 분쟁처리 절차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통보받지 못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그러한 대리인, 기관 및 개인이 자신의 절차적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d) 분쟁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이 당사자의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거나 또는 중재합의범위를 넘는 판정인 경우. 청구된 분쟁사안이 청구하지 않은 사안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부분에 한해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
 - dd) 외국 중재인의 구성과/또는 외국중재인이 수행한 분쟁해결절차가 부적법의 문제를 제공하지 않은 중재합의 또는 외국중재인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e) 외국 중재판정이 당사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았을 경우;
 - g)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이 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준거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종료된 경우;
 2. 베트남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승인되지 않는다.
 - a) 베트남 법률에 따라 분쟁이 중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b) 베트남에서 외국 중재인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 16)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24조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되는 외국중재판정(Foreign arbitrators' award which shall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Vietnam)
1. 다음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에서 승인되고 집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a) 베트남과 더불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조약에 서명한 국가의 중재판정
 - b) 동항 a호에 명시된 이외에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외국중재판정.
 2. 본조 제1항에 명시하는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되는 외국중재판정은 분쟁, 중재절차를 종료하고 유효한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이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국중재 또는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따른다.

Ⅲ. 베트남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법제도

베트남 상사중재법은 상사중재의 범위, 중재의 방식, 중재기관과 중재인, 중재의 순서와 절차,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베트남 내 외국 중재 기구와 활동 및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해서는 제10장 중재판정의 집행(CHAPTER 10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이하에서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⁷⁾ 그러나 당해 상사중재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중재를 그 적용범위로 하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분쟁당사자가 국제중재에 합의하고 베트남을 중재지로 선택한 경우에 상사중재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 상사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자발적 이행을 장려하고,¹⁸⁾ 중재판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중재판정의 이행을 요청할 권리를 규정하면서¹⁹⁾, 베트남 민사판결 집행에 관한 법률²⁰⁾에 따라 중재판정이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다만, 베트남에서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는 국내중재판정인지 외국중재판정인지에 따라서 신청의 기관이 상이하다.

즉 국내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위하여 관할권이 있는 민사판결집행기관으로 판정이 송부되지만,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는 관할권 있는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에 앞서서 베트남법무부(Ministry of Justice of Vietnam)로 송부된다.

1. 베트남에서의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현황

베트남 중재법의 현대화와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는 주요 관심사였다. 이러한 문제로 상사중재법을 제정하고 대법관회의 결의를 통해 국제적시류에 동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7)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17 June 2010)(이하 베트남 상사중재법)

(<https://sites.google.com/a/ecolaw.vn/luat-tieng-anh/1-bo-luat-luat/-law-on-commercial-arbitration>)

18)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65조 중재판정의 자발적 이행(Voluntary carrying out of arbitral award)
국가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중재판정을 이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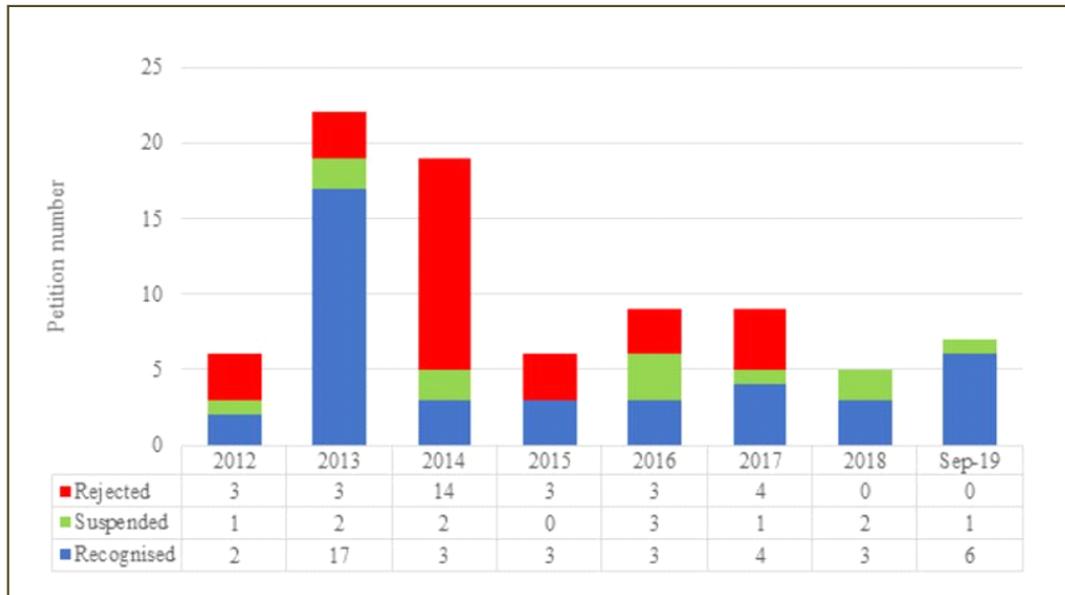
19)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66조 중재판정의 이행을 요청할 권리(Right to apply fo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중재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판정의 채무자가 판정에 따른 자발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본법 제69조에 따라 판정의 보류를 요청하지 않은 때에는, 판정 채권자는 해당 판정의 집행을 위해 관할 민사판결집행기관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20) Law No. 26/2008/QH12 of November 14, 2008, on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이하 베트남 민사집행법)
(<https://vanbanphapluat.co/law-no-26-2008-qh12-of-november-14-2008-on-enforcement-of-civil-judgments>)

21)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67조 중재판정의 집행(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중재판정은 민사판결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된다.

이러한 현황들은 최근 약 8년간의 현황을 통해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012년 1월1일 이후부터 2020년 9월30일 까지의 기간동안 83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41개(약41%)의 중재판정이 승인되었으며, 30개(36%)의 외국중재판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되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신청에 대한 베트남법원의 승인 및 거부현황〉



출처 : Foreign Court Judgments and Arbitral Awards in Vietnam
 (<https://www.ykvn-law.com/foreign-court-judgments-and-arbitral-awards-in-vietnam/>)

원칙적으로 외국중재판정에 따른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른 체약국에서 내려졌거나, 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다른 국가가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이루어 지게 된다.²²⁾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은 승인 및 집행이 청구된 중재판정에 대해 대다수의 경우, 베트남 법원은 상호주의에 기반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법원에 의해 승인 및 집행의 주요 거부사유인 상호주의가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승인 및 집행 청구에 대한 거부현황이 2015년 민사소송법 제정을 기점으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베트남 내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국제적 시류에 보다 근접한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2) 정홍식 외, 전계논문, 631면.

2. 외국중재판정 승인 거부사유

베트남의 법체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베트남 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 여부의 판단에 대한 문제는 2015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법원은 승인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한 항변사유의 증거가 충분하고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능력이 없는 경우, 부적법한 중재합의, 피집행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경우, 처분권범위를 넘은 중재판정, 중재판정부 또는 절차에 당사자가 관여할 수 없었던 경우, 중재절차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부적법한 경우, 중재판정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 또는 준거법국가에서 취소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베트남 법률에 따라 중재적격이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외국중재판정을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하는 것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당해 외국중재판정은 승인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에 대해 살펴본다.

(1)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능력이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당사자가 분쟁의 발생 전, 후에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개시할 수 있다.²³⁾ 외국중재의 경우 법역을 달리하는 당사자가 적법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중재합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당사자의 준거법에 따른 중재합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중재합의는 유효하지 않으며, 당해 중재판정에 대해 베트남 법원은 승인 및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베트남 상사중재법은 중재합의의 능력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중재합의 이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에 관한 권한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에 비추어,²⁴⁾ 중재합의 능력은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부적법한 중재합의

법역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당해 준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합의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중

23)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5조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조건(Conditions for dispute resolution by arbitration)

1.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한 경우 당해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된다. 중재합의는 분쟁발생 전 또는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24)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5조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조건(Conditions for dispute resolution by arbitration)

2. 중재합의의 당사자중 자연인인 어느 일방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한 중재합의에서 당해 자연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해 유효하다.

재합의가 유효하여야 한다.²⁵⁾ 그러나 중재합의가 이러한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중재판정에 대하여 베트남 법원은 승인 및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또한, 중재판정은 중재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면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중재판정은 취소될 수 있다.²⁶⁾ 또한, 중재합의에 하자가 있어 당해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합의를 무효로 한다. 베트남 중재법은 ① 중재적격이 없는 분쟁에 대해 중재합의 한 경우,²⁷⁾ ② 권한없는 자가 중재합의를 한 경우,²⁸⁾ ③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자²⁹⁾가 중재합의를 한 경우, ④ 중재합의가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³⁰⁾³¹⁾ ⑤ 당사자 일방이 기망 또는

25)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59조 불승인 유형(Cases of non-recognition)

1. 법원은 승인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한 항변사유의 증거가 충분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 b)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당해 준거법에 따라 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재합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 26)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68조 중재판정 취소사유(Grounds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판정은 거부된다.
 - (a) 중재합의가 없거나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 27) TYCO v. Leighton Contractors : 베트남 법원은 건설은 상행위가 아니고 TYCO가 베트남 건설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베트남의 국익을 해치는 법령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경과는 TYCO services Singapore v. Leighton Contractors Vietnam (2003). Allen&Overy, Publications: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Vietnam, 21 November, 2013, <http://www.allenoverly.com/publications/en-gb/Pages/Enforcement-of-foreign-arbitral-awards-in-Vietnam.aspx>; 栗田哲郎, アジアにおける外國仲裁判斷の承認・執行に關する調査研究(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國際協力部), 2012, 47-8면
- 28) Machinery Company (Cong ty co khi A) v. Conares Metal : 베트남 법원은 본 사례에서 당해 중재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수권되지 않은 자에 의한 서명으로 베트남법에 따라 무효이며, 따라서 중재합의도 무효하다고 판단 하였으며, 당해 중재판정의 베트남 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은 거부되었다.

Energio Novus v. Confectimex :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대표한 서명자가 중재합의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서명자가 서명권한을 결하였다는 이유로 베트남 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 29)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민법상 능력(legal capacity)에 대해 대법관회의 결의 01/2014에서는 민사능력이 없는 자는 미성년자, 행위무능력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동 결의 제3조).
- 30)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16조 중재합의의 형식(Form of arbitration agreements)
 1. 중재합의는 계약에서 중재조항의 형태이거나 별도의 합의 형태도 가능하다.
 2.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형식의 계약도 서면 중재계약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a) 전보, 팩스, 텔렉스, 이메일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타 형식으로 당사자 간의 교환을 통해 설정된 계약;
 - (b) 당사자 간의 서면 정보 교환을 통해 설정된 계약;
 - (c)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공증인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
 - (d) 거래 과정에서 계약, 원본 문서, 회사 헌장 또는 중재계약이 포함된 기타 유사한 문서와 같은 문서를 당사자가 참조
 - (dd) 한 당사자가 제안하고 다른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은 합의의 존재를 표현하는 청구 및 변호 진술의 교환.
- 31) Energio-Novus v.Vinatex : 하노이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대표한 서명자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여 서명권한이 부족한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증서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공증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베트남정부의 시행령(decree)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TYCO services Singapore v. Leighton Contractors Vietnam (2003). Allen&Overy, Publications: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Vietnam, 21 November, 2013, <http://www.allenoverly.com/publications/en-gb/Pages/Enforcement-of-foreign-arbitral-awards-in-Vietnam.aspx>; 栗田哲郎, アジアにおける外國仲裁判斷の承認・執行に關する調査研究(法務省・法務總合研究所國際協力部), 2012,

강박으로 중재합의를 하였고 그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⑥ 중재합의가 실효된 경우나 이행불능된 경우³²⁾ 당해 중재합의를 무효로 규정한다.³³⁾ 이처럼 중재합의가 취소되거나 무효인 중재합의에 기초한 중재판정은 베트남 내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³⁴⁾

(3) 피집행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피집행자가 중재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당해 중재판정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다.³⁵⁾ 즉, 피집행 단체나 개인이 외국중재절차에서 중재인 선정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의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기타 적합한 이유로 단체나 개인이 개인은 소송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³⁶⁾ 당해 중재판정에 대해 승인 및 집행을 허가할 수 없다.³⁷⁾

47~8면.

- 3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0 June 1958)(이하 뉴욕협약) 제2조 제3항 참조.
- 33)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18조 무효인 중재합의(Void arbitration agreements)
1. 분쟁이 이 법의 제2조에 규정된 중재적격범위를 벗어났다.
 2. 중재합의를 체결 한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흠결이 있다.
 3. 중재합의를 체결 한 사람은 민법상 법률행위능력을 결하였다.
 4. 중재 합의의 형식이 이 법 제16조를 준수하지 않았다.
 5. 중재합의 과정에서 기만, 협박 또는 강요를 받았음을 이유로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가 무효라는 선언을 청구한다.
 6. 중재합의가 법률에 규정된 금지 사항을 위반하였다.
- 34) 뉴욕협약 제5조
1.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인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 (a)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해 무능력자이거나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에 따라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 35)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59조 불승인 유형(Cases of non-recognition)
1. 법원은 승인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한 항변사유의 증거가 충분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 c) 대리인, 단체 및 개인인 중재판정의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선임 및 외국 중재인의 분쟁처리 절차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통보받지 못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그러한 대리인, 단체 및 개인이 자신의 절차적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36) 뉴욕협약 제5조
1.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인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 (b) 판정이 불리하게 인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기타 이유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 37) *Evan Ekris v. Vinacofexim* : 2012년 하노이 인민법원은 국제면화협회(the International Cotton Association:ICA)가 내린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베트남 피신청인에게 정식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통지의 흠결이 (민사소송법 제380조 제1항 (c)에서 규정하는) 중재절차의 흠결임과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9조가 규정하는) 당사자의 자기방어권에 관한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Allen & Overy, supra note 512.)

(4) 처분권범위를 넘은 중재판정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청구 범위내에서 심리하고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이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았거나 중재합의에 있어 재판권범위에 없는 사항을 심리하였거나, 또한 재판관할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당해 중재판정은 취소될 수 있다.³⁸⁾ 뿐만 아니라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에 관한 판정은 취소사유가 되기도 한다. 다만, 중재절차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한 판정과 청구되지 않은 부분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 청구부분에 대한 판정은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³⁹⁾ 이는 본안에 관한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그 방식이나 장소와 같은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도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배치되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기한 절차진행에 있어서도 중재판정의 승인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⁴⁰⁾

(5) 중재판정부 또는 절차에 당사자가 관여할 수 없었던 경우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 또는 절차에 관해 중재합의에 당해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당해사항에 관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이때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절차에 있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중재판결은 취소할 수 있으며,⁴¹⁾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⁴²⁾ 특히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따르지 않거나 중재판정부가 베트남 상사중재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법원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당해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

38)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68조 중재판정 취소사유(Grounds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판정은 거부된다.

(c)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재판권범위내에 없었던 경우; 중재판정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포함된 경우 당해 사항은 거부된다.

39)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59조 불승인 유형(Cases of non-recognition)

1. 법원은 승인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한 항변사유의 증거가 충분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d) 분쟁에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이 당사자의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거나 또는 중재합의범위를 넘는 판정인 경우. 청구된 분쟁사안이 청구하지 않은 사안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부분에 한해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다.

40) Hanoi People's Court, Judgment No. 11/2019/QD-PQTT: 중재지가 소재한 국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중재심리를 진행하여, 양당사자간의 중재 계약상의 합의를 무시함으로써 베트남 국내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절하였다.

41)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68조 중재판정 취소사유(Grounds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판정은 거부된다.

(b)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42)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59조 불승인 유형(Cases of non-recognition)

1. 법원은 승인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한 항변사유의 증거가 충분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c) 대리인, 기관 및 개인인 중재판정의 피신청인이 중재인의 선임 및 외국 중재인의 분쟁처리 절차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통보받지 못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그러한 대리인, 기관 및 개인이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만을 증대한 것으로 보며, 당해 중재판정은 무효로 된다.⁴³⁾

(6) 중재절차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부적법한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지 않은 때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이때 외국중재절차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 당해 외국중재판정은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되지 못한다.⁴⁴⁾

(7) 중재판정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는 경우

베트남 내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이어야 하며 유효하여야 한다. ⁴⁵⁾ 따라서 중재판정이 아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때에는 당해 중재판정은 베트남 내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없다.⁴⁶⁾ 이때 구속력과 관련하여 베트남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당국 또는 법원에 의해 중재판정에 대한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⁴⁷⁾

43) 대법원의 결의 01/2014 제14조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68조에 규정된 중재판정 무효의 근거(Bases for annulment of arbitral awards prescribed in Article 68 of LCA)

2. 법원은 이하의 경우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58조 및 제61조에 규정된 중재판정에 대해 무효로 할 수 있다.
 - b)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절차진행에 있어 당사자의 합의 또는 상사중재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의미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규칙의 구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지 않거나 또는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상사중재법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상사중재법 제71조 제7항에 따른 법원의 시정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당해 위반은 심각한 것으로 본다.

44) PT. Badega Agri Abdi v. Soon Chi Co., Ltd : 법원은 PT. Badega Agri Abdi에게 법률 문서 원본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의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및 회사의 대표자를 판단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와 당사자 간의 계약분쟁해결절차는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370조 (1)(a), (c) 및 (dd), 중재합의 및 인도네시아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栗田哲郎, アジアにおける外國仲裁判斷の承認・執行に関する調査研究(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國際協力部), 2012, 48면)

45)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24조

1. 본조 제1항에 명시하는 베트남에서 승인 및 집행되는 외국중재판정은 모든 분쟁의 내용을 해소하고 중재절차를 종료하고 유효한 중재판정부의 최종판정이다.

46)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59조 불승인 유형(Cases of non-recognition)

1. 법원은 승인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한 항변사유의 증거가 충분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 e) 외국중재판정이 당사자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았을 경우;

뉴욕협약 제5조

1.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 (e) 중재판정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그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7) Ho Chi Min City People’s Court, Judgement No. 25/2018/QDKDTM-PT, dated 28 June 2018 : 베트남 법원은 스위스중재법원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에 대해 법정지인 스위스 당국 또는 법원에 의한 중재판정의 유효성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이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재판정이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신청이 거부하였다.(cf. Nguyen Ngoc Minh, Nguyen Thi Thu Trang and Nguyen Thi Mai Anh, “Vietnam”, The Asia-Pacific Arbitration Review 2020, 24 May 2019.)

(8)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 또는 준거법국가에서 취소 또는 종료된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 및 준거법에 따라야 하며, 당해 중재판정이 해당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 또는 준거법 국가의 당국 또는 법원에 의해 취소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판정은 베트남 내에서 승인되지 않는다.⁴⁸⁾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당해 판정에 적용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기각 또는 유보되었다.⁴⁹⁾

(9) 분쟁이 베트남법에 따라 중재적격이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당해 사안이 중재절차에서 다를 수 있는 분쟁이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분쟁대상이 베트남법에 따라 중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때에는 당해중재판정은 베트남에서 승인될 수 없다.⁵⁰⁾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따라 ① 상업적 행위로 인한 분쟁 ②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당사자간의 분쟁 ③ 기타 법률이 중재로 해결할 것으로 규정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이다.⁵¹⁾ 이에 반해 베트남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비상인인 사인간의 계약 또는 비계약적 채무에 관한 분쟁, 혼인, 가정 및 유산에 관한 분쟁 그리고 파산, 노동, 행정 등에 관한 분쟁은 중재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⁵²⁾ 하지만 소비자분쟁의 경우 소비자가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중재적격을 인정하고 있다.⁵³⁾

48)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59조 불승인 유형(Cases of non-recognition)

1. 법원은 승인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제출한 항변사유의 증거가 충분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지 않는다:
 - g)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준거법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종료된 경우;

49) 뉴욕협약 제5조 1. (e)

50)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59조 불승인 유형(Cases of non-recognition)

2. 베트남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승인되지 않는다.
 - a) 베트남 법률에 따라 분쟁이 중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51)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2조 중재적격(Competence of arbitration to resolve disputes)

1. 상업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
2. 적어도 1인 이상이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3. 개별법에 규정된 당사자간의 기타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 될 수 있다.

52) 손경한 외,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5, 82면 참조; Do Trong Hai & Tran Duc Son, Vietnam Arbitration,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4, p. 111.

53)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17조 소비자 분쟁해결방법의 선택권(Right of consumers to select dispute resolution method) 물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에 있어서, 제공자가 해당 물품 및 서비스공급에 관한 표준약관에 중재조항을 작성하고 삽입한 경우, 소비자는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중재 또는 법원의 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물품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10) 중재판정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외국중재판정이 베트남법상 기본원칙에 반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베트남 내에서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된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민사소송법은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는 것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법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law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에 위배되는 경우 당해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된다.⁵⁴⁾ 뿐만 아니라 베트남 상사중재법에서는 판정이 베트남법의 기본원칙(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Vietnamese law)에 반하는 경우에는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이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이들 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개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베트남 민법상 기본원칙으로 계약자유 원칙⁵⁶⁾, 평등의 원칙⁵⁷⁾, 신의성실의 원칙⁵⁸⁾, 선량한 풍속존중의 원칙⁵⁹⁾, 기본권존중의 원칙⁶⁰⁾, 공익존중의 원칙⁶¹⁾ 등이 그

54)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59조 불승인 유형(Cases of non-recognition)

2. 베트남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외국중재판정은 승인되지 않는다.

b) 베트남에서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것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55) 베트남 상사중재법 제68조 중재판정 취소사유(Grounds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재판정은 거부된다.

(e) 중재판정이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56) Law No. 91/2015/QH13 dated November 24, 2015 of the National Assembly on CIVIL CODE(이하 베트남 민법)(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정보에 게재된 베트남민사법전의 해석을 참조하였음)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1=1&AST_SEQ=1087&CTS_SEQ=42243&ETC=1)

베트남 민법 제4조 민사법의 적용(Application of the Civil Code)

1. 본법은 민사관계를 조율하는 일반적 법칙이다.

2.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민사관계를 조율하는 기타 관련 법률은 본법 제3조에서 규정된 민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기타 관련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거나, 규정되어 있지만 본조 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4. 본법의 규정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는 같은 문제에 대하여 차이점이 있으면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57) 베트남 민법 제5조 관습의 적용(Application of practices)

1. 관습이란 형성되어 오랫동안 여러차례 반복되고 어느 지역, 민족, 공동체 또는 민사의 한 영역에서 널리 인정되어 적용되는, 구체적인 민사관계에서 개인,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있는 행동규칙이다.

2. 각 측 사이의 합의가 없거나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관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적용될 관습이 본법 제3조에서 규정된 민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58) 베트남 민법 제6조 유사한 법률의 적용(Application of analogy of law)

1. 민사법률의 조율범위에 속하는 관계가 발생하지만 각 측 사이의 합의가 없고,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고, 적용할 본법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민사관계를 조율하는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2. 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서 유사한 법률을 적용하지 못 할 경우에 1. 본법 제3조에서 규정된 민법의 기본적인 원칙, 재판수속, 공평성을 적용한다.

59) 베트남 민법 제8조 민사권의 확립 근거(Bases for establishment of civil rights)

민사권은 이하의 근거로부터 확립된다:

1. 계약.

2. 일방적인 법적 행위.

3. 법원, 법률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의 결정.

4. 노동, 생산, 경영의 결과; 지적 소유권의 대상을 만들어낸 활동의 결과.

것이다. 또한, 베트남 상법은 제2절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상업활동에서 사업자 평등의 원칙⁶²⁾, 상업활동에 대한 자유와 합의 자유의 원칙⁶³⁾, 상업활동에서 관행적용의 원칙⁶⁴⁾, 소비자의 적법한 이익보호의 원칙⁶⁵⁾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전과 상법의 해석에 있어 광범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다.⁶⁶⁾ 이로 인해 기본원칙위반을 이유로 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는 베트남법 체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
5. 재산점유.
 6. 법적 근거없이 재산을 사용한 경우, 재산에 대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7.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8. 위임 없이 일을 진행한 경우.
 9. 법률로 규정된 다른 근거.
- 60) 베트남 민법 제9조 민사권의 행사(Exercise of civil rights)
1. 개인, 법인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민사권을 행사하고 본법 제3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반해서는 안 된다.
 2. 개인, 법인이 본인의 민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민사권 종료의 근거가 아니다. 다만,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61) 베트남 민법 제10조 민사권의 행사의 제한(Limitations on exercise of civil rights)
1. 개인, 법인은 본인의 민사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본인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한 다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2. 개인, 법인이 본조 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 또는 다른 관할기관에서 위법행위의 성질과 여파에 근거하여 그 개인, 법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지 않고, 손해를 준다면 배상을 강제하고 법률로 규정된 다른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 62) Vietnam Commercial Law - 36/2005/QH11(이하 베트남 상법)(<https://vietanlaw.com/36-2005-qb11/>)
베트남 상법 제10조 상업활동에서 사업자 평등의 원칙(Principle of traders' equality before law in commercial activities)
모든 경제영역에서 사업자는 상업활동에 있어서 법앞에 평등하다.
- 63) 베트남 상법 제11조 상업활동에 대한 자유와 합의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freedom and freewill to agreement in commercial activities)
1. 당사자는 상업활동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통 및 관습 그리고 사회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합의에 있어 자유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2. 상업활동에 있어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동해야 하며,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을 강요, 위협 또는 방해하기 위한 자신의 의사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64) 베트남 상법 제13조 상업활동에서 관행적용의 원칙(Principle of application of practices in commercial activities)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없었으며, 당사자 사이에 관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법과 민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한 상업적 관행이 적용된다.
- 65) 베트남 상법 제14조 소비자의 적법한 이익보호의 원칙(Principl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interests of consumers)
1. 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물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진실한 정보를제공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거래 또는 제공하는 물품및/또는 서비스의 품질과 적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66) Toepfer v. Sao Mai (2011) : Toepfer사가 영국중재판정부에 베트남 Sao Mai사에 대한 약정손해배상을 묻는 중재절차를 통해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베트남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신청 하였으나, 베트남 대법원은 중재판정을 받은 채권자가 손해를 줄이지 못한 것은 민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IV. 결어

베트남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 왔으며, 이러한 태도는 외국의 중재판정에도 유사한 기초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외국중재판에 대해서도 명문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하위법령의 사소한 불일치에조차도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해왔다. 이러한 베트남 중재의 높은 판정 취소율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왔다. 이러한 베트남법과 베트남법원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는 중재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국제적인 중재친화적 법제환경을 조성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베트남 상사중재법, 베트남 민사소송법 및 베트남 대법원결의 01/2014등을 통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편향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최근의 중재판정취소신청에 대한 기각등을 통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법개정이전의 현황에 비추어 높은 비율의 승인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의 국제적 신뢰성회복에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트남 법원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을 거부하는 근거로서 드는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고 이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넓어, 베트남에서 중재판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제를 보완할 수 있는 추상적 법개념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제와 그에 대한 사법적 법해석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정,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3.
- 김성룡, “FTA시대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VIAC 중재규칙과 KCAB 국제중재규칙 비교를 중심으로 -, 「중재연구」 30권 제2호, 2020.
- 박진아, “베트남 중재법제와 유의점”, 「법학연구」 제47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손경한/이규호/박진아/장준혁/이재열/한종규/이흥기,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5.
- 신충일, “베트남 신·구 중재법의 비교”, 「국제거래법연구」 제22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13.
- 오현석,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제와 중재절차”, 「국제상학」 29권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 정홍식/임병우/이연경/김강, “베트남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 정홍식/임병우/이연경/김강, “베트남에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0.
- 지엔향, “베트남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2019.
- 황티탄폭, “베트남 상사중재 활성화”, 경상대학교대학원 국제통상학과, 2019.
- Do Trong Hai & Tran Duc Son, Vietnam Arbitration, International Comparative Legal Guid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2014.
- Nguyen C., Vu, A.D., “Arbitration in Vietnam,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31, Kluwer Law International, 2014.
- Nguyen Ngoc Minh, Nguyen Thi Thu Trang and Nguyen Thi Mai Anh, “Vietnam”, The Asia-Pacific Arbitration Review 2020, 24 May 2019.(<https://globalarbitrationreview.com/review/the-asia-pacific-arbitration-review/2020/article/vietnam>)
- Shiwakoti, Dinesh Raj, “A Review of Vietnam’s Law”, No 54 on Commercial Arbitration, Asian Dispute Review, Vol. 16, Issue 2, April 2014.
- unknown, Arbitration Legislation, Vietnam: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25 February 2003, Aspen Publishers Inc., World trade and arbitration materials Vol.16 No.4, 2004.

Vietnam's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preparation for EVFTA, Working Paper No. 18/2017 | December 2017.

栗田哲郎, アジアにおける外国仲裁判断の承認・執行に関する調査研究(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国際協力部), 2012.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17 June 2010)(<https://sites.google.com/a/ecolaw.vn/luat-tieng-anh/1-bo-luat-luat/-law-on-commercial-arbitration>)

CODE OF CIVIL PROCEDURE No.: 92/2015/QH13(<https://www.wipo.int/edocs/exdocs/laws/en/vn/vn083en>)

Law No. 26/2008/QH12 of November 14, 2008, on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 (<https://vanbanphapluat.co/law-no-26-2008-qh12-of-november-14-2008-on-enforcement-of-civil-judgments>)

Vietnam Commercial Law - 36/2005/QH11(<https://vietanlaw.com/36-2005-qh11/>)

Law No. 91/2015/QH13 dated November 24, 2015 of the National Assembly on CIVIL CODE(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1=1&AST_SEQ=1087&CTS_SEQ=42243&ETC=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0 June 1958)

<https://vanbanphapluat.co/law-no-54-2010-qh12-on-commercial-arbitration>

<https://vanbanphapluat.co/law-no-26-2008-qh12-of-november-14-2008-on-enforcement-of-civil-judgments>

<https://www.newyorkconvention.org/english>

<https://vietanlaw.com/the-law-no-91-2015-qh13/>

<http://www.allenoverly.com/publications/en-gb/Pages/Enforcement-of-foreign-arbitral-awards-in-Vietnam.aspx>

ABSTRAC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e Vietnamese Legal System

Joon-Ho Sung

Vietnam is an important country with many trade transac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Arbitration is a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that can arise with the increase in trade transactions.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legal system and precedents of Vietnam on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Such is the case because the law in Vietnam and the court's position on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ssued by the courts depend on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parties' rights concerning their disputes. Therefore, it is of great value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o analyze the exact differences between approval and the denial of approval.

Vietnam has enacted the Commercial Arbitration Act, which replaces the previous Commercial Arbitration Decree and creates an arbitration-friendly environment that meets international arbitration standards.

Regarding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the Commercial Arbitration Act,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Vietnam Foreign Arbitration Awards Approval and Enforcement Ordinance are regulated.

Following these laws and regulations, the reasons for the approval, enforcement, and rejection of the arbitral award are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these laws and inappropriate arbitration agreements, an arbitral award beyond the scope of its right of disposition, an arbitral tribunal, or the concerned parties could not be involved in a proceeding or an arbitral award if the involved party does not have an opportunity to exercise its rights lawfully. If the state agency in the forum does not recognize the arbitral award, the dispute is not subject to arbitration under Vietnamese law, or the arbitral award does not conform to the basic principles of Vietnamese law, the parties are not bound,

and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 is rejected for approval and execution.

Key Words :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Vietnam Supreme Court Resolution 01/2014, Vietnam Code of Civil Procedur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Vietnamese law